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인권상황 특별보고관  
비사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 특별보고관

참조:  
AL PRK 3/2020

2020년 11월 17일

각하께,

우리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인권상황 특별보고관과 비사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 특별보고관은 인권이사회 결의안 43/25와 44/5에 따른 권한으로서 장관 앞으로 통신문을 보내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번 서신을 통해 각하의 정부가 다음 정보에 주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접수한 정보는 각하의 정부 소속 군인에 의한 이대준 씨의 포획/억류(capture), 심문, 사살 사건입니다.

접수된 정보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2020년 9월 21일 01:30경 대한민국(이하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이대준 씨는 정부소유 어업지도선 조타실을 나섰습니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그는 02시에서 03시 사이 실종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당시 어업지도선은 남한수역 연평도 남쪽 약 1.9km (1.2 miles) 해상에 있었습니다.

당일 11:30경 이 씨의 동료는 그가 사라졌음을 알고는 선체와 근처 수역을 수색했으나 그를 찾지 못했습니다. 12:51에 선원은 해양경찰청에 그의 실종을 신고했습니다. 오후에 한국 해군과 해양경찰청은 그 지역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9월 22일 15:30경 한국 군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하 '北')의 배가 北 수역 등산곶 주변에 있던 이대준 씨를 포착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국방부에 보고했습니다. 이는 이 씨가 그가 실종된 장소로부터 서북서 방향으로 26시간 동안 38km를 표류하였다는 의미입니다. 한국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된 군의 보고에 따르면 北 군인들은 그에게 붙잡을 수 있도록 밧줄을 던졌고, 그를 놓쳐서 2시간 동안 수색하기 전까지 3시간 동안 그를 면밀히 조사하고 감시했습니다. 北 군인들은 이 씨를 다시 발견하고 그를 해상에 둔 채로 상부명령을 1시간 더 기다렸습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그날 21:40경 北 군인들은 이대준 씨에게 해상에서 10회 총격을 가했습니다. 22:00를 조금 넘어서 그들은 기름을 그의 유해에 붓고는 불을 붙였습니다.

9월 24일 한국 국방부는 北 선원과 지상 사령부 간 대화 첩보를 바탕으로 상기 기술한 사건을 보고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020년 9월 25일 北이 보낸 서한

9월 25일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北 조선중앙노동당 통일전선부로부터 한국 대통령 앞으로 보낸 서한을 접수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서한에 따르면 9월 22일 北 해군 함정은, “불법침입자”라고 표현한, 이대준 씨에게 80m까지 접근하여 그에게 신원을 밝힐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에는 한 두어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답변을 얼버무리더니 더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의 지속된 침묵 때문에 北 군은 그에게 더 접근하여 2회 총격을 가했습니다. 놀란 이 씨가 물로 들어가 무엇인가를 몸에 부착하려고 허리를 굽히는듯 보였습니다.

해안경비부 수역경비담당(Coastal Security Bureau)의 해상경계근무규정에 따라 승인된 행동준칙에 따라 함장 결정하에 北 군인들이 10발 가량을 이 씨에게 발사했습니다. 이때 그 거리는 40-50m였습니다.

발포 후 어떤 움직임이나 소리도 없었습니다. 北 군은 수색을 위해 10m까지 다가갔으나 부유물과 다량의 혈흔만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이 씨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하고는 국가 비상방역규정에 따라 부유물에 불을 붙였습니다.

통일전선부는 해상경계근무 강화를 지시했으며 불행한 사건의 재발을 피하기 위해 해상 단속의 전 과정을 담은 체계를 만들 것 또한 지시했습니다.

상기 제기된 혐의 사실과 우려와 관련하여 본 서신에 딸린 해당 혐의와 관련한 국제인권법률과 기준을 인용한 **국제인권법 참조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이사회가 부여한 권능에 따라 우리의 책무로서 우리의 관심을 끈 모든 사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의 사안에 대해 각하가 준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상기 제기된 혐의와 관련하여 어떠한 추가 정보나 의견이라도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해상에서 있었던 이대준 씨에 대한 포획/억류, 심문, 사살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결과를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왜 그의 유해가 가족에게 보내지지 않았는가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어떤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이 사건에 책임있는 자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었는지 혹은 물을 계획인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생명권을 포함한 인권과 양립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코로나19방역조치 개정을 포함하여 각하께서 취한 재발방지대책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신과 각하의 정부로부터 받는 답신은 **누리집**을 통해 60일 후에 공개됩니다. 이후 인권이사회에 정례적으로 보고되는 보고서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제기된 침해를 중단하고 그것의 재발을 방지하며 해당 혐의가 정확하다고 지지 혹은 시사하는 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제기된 침해 혐의의 책임자에게 죄를 꼭 묻도록 보장하는 모든 필요한 임시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기자회견의 근거가 될 정보가 즉각적 주의관심이 타당하다고 볼 사안임을 밝히기에 충분히 신뢰할 만할 때에는 우리의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상기 혐의의 잠재적 시사점에 대하여 더 많은 대중에게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도자료는 우리가 각하의 정부와 해당 사안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접촉하였다는 점을 명시할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한 혐의서한이 대한민국 정부에게도 발송되었다는 점을 양지바랍니다.

각하에 대한 우리의 최고의 경의를 확인하는 바입니다.

Tomás Ojea Quintana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인권상황 특별보고관

Agnes Callamard

비사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 특별보고관

## 붙임. 국제인권법참조

상기 협의 사실과 우려와 관련하여 우리는 각하의 정부의 관심을 세계인권선언 제3조와  
귀 정부가 1981년 9월 14일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규약’) 제6조제  
(1)항로 돌리고자 합니다. 각 조항은 모든 개인의 생명과 안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그러한  
권리가 법률에 의해 보호되고 누구도 자신의 생명을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  
습니다.

우리는 상기 제6조가 규약 제4조제(2)항에 절대적 권리의 하나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합니다. 이런 이유로 자의적 생명 박탈에 대항하는 제6조의 보장은 모든 경우에서 적용되어  
야 하며 이는 무력분쟁과 공중비상사태를 포함합니다(자유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제36호).

법집행공무원의 치명적 무력의 사용과 관련하여도 당사국은 법집행 임무를 부여받은 군  
인을 포함해서 자신의 법집행공무원에 의한 자의적 생명 박탈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  
를 취할 것이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법집행공무원에 의한 치명적 무력 사용을 규제하는  
적절한 법제, 법집행공무가 인간 생명에 가하는 위험을 최소화할 요구에 부합하는 양식으로 절절  
히 계획되게끔 고안된 절차, 인명사건 및 기타 생명을 위협한 사건에 대한 의무적 보고, 검토와  
조사, 대중통제 책임을 맡은 공권력에게 덜 치명적인 수단과 치명적 무력사용에 의지하는 필요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구를 공급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나 법집행공무원의 모든 작전  
은 관련 국제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총회 결의안 34/169(1979)에 따른 법집행공무원행동강령  
(Code of Conduct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과 일반논평 제36호(1990)에 따른 법집행공무원의  
무기 및 무력사용 기본원칙이 그것입니다. 이런 문헌에 따르면 **무기를 의도적으로 치명적이게 사  
용하는 것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법집행공무원은 그들의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엄격히 필요한 경우에만 무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  
다. 사용된 무력은 정당한 목적의 달성에 비례해야만 합니다. 만약 치명적 무력이 사용되어야 한  
다면 항상 통제가 수반되어야 하며 피해와 부상은 완화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가능한 빨리  
의료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가해자를 조사하고 법의 심판을 구할 의무와 관련하여서** 우리는 자유권규약위원회 일반  
논평 제31호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 논평은 당사국에게 그들의 대리인의 침해에 대항하여 규약  
에 담긴 권리의 보호를 보장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고 명시합니다. 규약 침해에 대한 조사 실패와  
그런 침해의 가해자에게 죄를 묻지 못하는 일은 각기 별도의 규약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CCPR/C/21/Rev.1/Add.13, 단락 15).